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
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21 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 백종헌·박덕흠·황보승희

박성중 • 구자근 • 이헌승

최형두 · 정희용 · 김도읍

추경호 • 유경준 • 박 진

김성원 · 김상훈 · 이주환

신원식 · 강대식 · 서정숙

정동만 · 강민국 · 박수영

허은아 • 박재호 • 권명호

박대수 · 장제원 · 김예지

김선교 • 한기호 • 송언석

金炳旭・양금희・서병수

전봉민 · 홍준표 · 김희곤

서범수 · 최춘식 · 유두현

조경태 · 하영제 · 유상범

이만희 · 최승재 · 정경희

하태경 · 김정재 · 강기유

최인호 • 박성민 • 김석기

김희국 · 김기현 · 권성동

임이자 · 주호영 · 정운천

서일준 · 김용판 · 안병길

김미애 의원(61인)

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전세계적 대유행 발생 상황에서 이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백신 및 치료제, 마스크, 방호복 등 관련 제 품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.

그러나 「약사법」,「의료기기법」등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해당 물 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기술·인력·국제 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, 수시동반심사, 우선심사,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, 긴급 생산·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,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 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감염병,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고,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,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를 정함(안 제5조).

- 나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, 인력 및 국제협력, 임상시험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각 개발 과정별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수시로 심사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라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된 경우다른 의약품등의 심사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마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된 경우 추가 임상시험 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하나 이상 붙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바. 의약품으로서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감염병 등 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등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(안 제1 1조).
- 사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등에 미친 영향 및 안전성·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(안 제12조).
- 아.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는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(안 제13조).

- 자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해당 의약품등을 제공하는 등 환자치료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차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미허가 의약품등의 제조·수입이나 국내 임상시험 승인 없이 해외 개발 중인 의약품등을 수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한 의약품등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함(안 제15조).
- 카.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만연 등 국가비상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특례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긴급특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- 타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의 제 조·수입, 저장, 진열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파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과 복합·조합 구성된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경우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

받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 법률 제 호

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을 지원·촉진하고 의약품,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긴급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"이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탄저 균·독가스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이 나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조제1항제 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, 방사선비상, 방사능재난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등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 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·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을 지원·촉진하여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품질,

-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, 평가 및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③ 「약사법」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(이하 "의약품등"이라한다)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등의 연구·개발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약사법」을 적용한다.
- 제5조(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지정) ① 의약품등을 개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의약품등을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약품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설명 자료
 - 2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약품등이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비임상시험(「약사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임상시험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임상시험의 방법 및 결과에 관한자료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의약품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약사

- 법」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약품등을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으로서 해당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함을 목적으로 할 것
 - 가. 기존의 의약품에 대하여 내성(耐性)이 생긴 병원생물(病原生物)에 작용하는 항생제, 항바이러스제, 항진균제 또는 백신 등의 의약품
 - 나. 새로운 병원생물 또는 치료경험이 없는 병원생물에 작용하는 항생제, 항바이러스제, 항진균제 또는 백신 등의 의약품
 - 다. 생화학적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 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등
 - 라. 방사선 방호 의약품등
 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
- 2.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 결과에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 예측될 것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등 보건위기

대응 의약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된 의약품등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는 의약품등이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허가(이하 "제조판매품 목허가등"이라 한다)를 받은 경우
-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개발하려는 자의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의 실시를 지원하거나,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국내외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・인력의 국제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・개발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임상시험 지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으로 지정받은 의약품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감염병 등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의 작성, 임상시험 대상자의 모집 또는 국제공동 임상시험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의 실시와 임상시험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상시험 결과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·관리할수 있으며,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임상시험을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수시동반심사) ①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작성하는 제조판매품목허가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정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제출하고, 이를 수시로 심사(이하 "수시동반심사"라 한다)하여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수시동반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동반심사에 제출할 자료의 종류·범위, 제출일정 및 심사 결과의 통보 시기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후 제1

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. 제출한 자료의 종류·범위 등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정별 수시동반심사가 완료되면 제2항에서 협의된 심사 결과의 통보시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정별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, 심사 결과가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시동반심사가 완료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 결과를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신청, 제2항에 따른 승인·변경승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우선심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이 아닌의약품등에 대한 심사보다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처리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제조판매품목허가등의 조건부 허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

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이 신청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하나 이상 붙여 제조판매품목허 가등을 할 수 있다.

- 1. 제2항 각 호의 임상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해당 의약품등의 유효성을 확증할 것
- 2. 특정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(조산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다)만 처방할 것
- 3. 활력징후(活力徵候)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 적 절차를 수행할 것
-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한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 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
- 2.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이 약물역학(藥物疫學), 약물치료학(藥物治療學), 병태생리학(病態生理學)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에 대하여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
- 3. 그 밖에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안전성·유효 성 입증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
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 중 핵 물질·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유효성을 연구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하나 이상 붙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할 수 있다.
- 1.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투약자 대상 연구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 증할 것
- 2. 특정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만 처방할 것
- 3. 활력징후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할 것
- 4. 동물에게 실시한 유효성 연구에 근거하여 허가된 감염병 등 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등임을 명시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교부할 것
- ④ 제3항에 따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한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-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이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 그 의약품등의 작용기전(作用機轉)이 병태생리학 등의 관 점에서 합리적임을 설명하는 자료
- 2. 동물에 대한 시험 결과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에 충분하

다고 입증하는 자료

- 3.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사용된 평가변수가 사람의 생존가 능성 향상 등 유익성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
- 4. 신청된 의약품등에 대한 사람 또는 동물의 약물동태(藥物動態)· 약물동력(藥物動力) 자료 등이 사람에게 적용할 적절한 투여량임 을 설명하는 자료
- 5. 그 밖에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안전성·유효 성 입증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한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가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11조(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간주) 의약품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은 「약사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가치 평가 및 공개) ① 식

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이 환자의 치료 시기·치료 효과 등에 미친 영향
- 2.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안전성·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적 가치
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, 공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안전사용 조치 등) ①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용 의약품등의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

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회수·폐기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회수·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회수·폐기와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환자치료지원사업의 실시) ①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감염병 등 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해당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등 환자치료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환자치료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,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공급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환자치료지원사업을 완료한 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의 지원 대상, 범위 및 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 링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·치료 의약품등에 관한 특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상황(이하 "국가비상상황"이라 한다)에 적절히 대처하기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(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)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 - 1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의약품등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행위
 - 2. 「약사법」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수입자에게 수입하게 하고 의료기관등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행위

- 3.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등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법·용량, 효능·효과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자에게 수입하게 하고, 의료기관 등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행위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 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의약품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수 있는 의약품등의 종류·대상,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절차, 저장 조건·방법,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6조(국가비상상황 시 긴급특례허가)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·제3항·제4항, 제42조제1항 및 이 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상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특례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의약품등의 임상시험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능이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만연, 기타 건강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되

는 의약품등일 것

- 2. 해당 의약품등의 사용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을 것
-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모두해당하고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약사법」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안전성·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긴급특례허가를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긴급특례허가를 받은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조판매품목허가등"은 "긴급특례허가"로 본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긴급특례허가를 받은 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,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긴급특례허가를 받은 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본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특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 제2항에 따라 긴급특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상상황이 종료된 경우
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상상황이 종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긴급특례허가를 받은 자에게 긴급특례허 가 된 의약품등을 「약사법」 제71조에 따라 회수·폐기하게 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제17조(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진단·치료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(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)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 - 1.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 및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비상상황에 대응 하도록 하는 행위
 - 2.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제2항 및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수입업자에게 수입 하게 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행위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의료기기법」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조·수입한 의료기기(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)를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

기기취급자에게 수리·판매·임대·수여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판매·임대·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게 할 수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·절차, 허가 등 면제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및 의료기기 수거 등 사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의약품등 및 의료기기 외의 물품에 관한 특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상황 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등 및 의료기기 등과함께 사용되는 물품에 관하여 특별히 그 사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경우 자료활용에 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허가 ·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된 감염 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줄

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·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기 위하여자료를 제출한 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.

- 1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과 복합·조합 구성된 의료기기 인 경우
- 2.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적응증(適應症)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인 경우
-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는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5항(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본다.
- 제20조(수수료)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2를 삭제한다.

②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2를 삭제한다.